

## 제12장. 이용계약

### 제5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5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나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한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 제5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장기요양등급대상자가 상담 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제54조 (급여비용/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021년 1월 1일 기준 노인요양시설 기본 수가 및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노인요양시설 기본 수가 (월 한도액)

(30일 기준 / 단위: 원)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 기본 수가               | 2,580,900 | 2,394,300 | 2,260,800 |
| 본인부담금<br>(일반수급자 기준) | 516,180   | 478,860   | 452,160   |
| 본인부담금 내역            | 기초수급자     |           | 0%        |
|                     | 차상위계층     |           | 8%        |
|                     |           |           | 12%       |
|                     | 일반수급자     |           | 20%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

| 요양<br>등급 | 기준일 | 급여항목        |              |              |
|----------|-----|-------------|--------------|--------------|
|          |     | 급여총액<br>(원) | 공단부담금(80%/원) | 본인부담금(20%/원) |
| 1등급      | 30일 | 2,580,900   | 2,064,720    | 516,180      |
|          | 31일 | 2,666,930   | 2,133,550    | 533,380      |
| 2등급      | 30일 | 2,394,300   | 1,915,440    | 478,860      |
|          | 31일 | 2,474,110   | 1,979,290    | 494,820      |
| 3등급      | 30일 | 2,260,800   | 1,808,640    | 452,160      |
|          | 31일 | 2,336,160   | 1,868,930    | 467,230      |

## 기관 비급여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 비<br>급<br>여<br>현<br>황 | 비급여항목 | 금액(원)    | 내용        | 산출근거         | 비고 |
|-----------------------|-------|----------|-----------|--------------|----|
|                       | 식재료비  | 270,000원 | 1식 3,000원 | 3,000X3식X30일 |    |
|                       | 간식비   | 36,000원  | 1일 1,200원 | 1,200X30     |    |
|                       | 이미용비  |          |           |              |    |

-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① 식재료비
  - ②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경감률에 따라 8% 또는 12%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영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제55조 (급여비용 청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8 또는 100분의 12**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가 감면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40% 또는 60%가 경감되나, 식재료비 및 간식비는 경감에서 제외된다.
4.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 ①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 ⑥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 내에서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5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서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58조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⑦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⑨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 ⑩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